

2020년 9월 22일 발행인·편집인 : 이용섭·김용승 발행처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치평동) 전화 (062) 613-6343 팩스 (062)613-6219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402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고시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020년 9월 21일(월) 0시부터 9월 27일(일) 24시까지 연장하고,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 9. 20.

광주광역시청

1.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벌칙) 동법 제80조제7호

2. (주요 행정명령 내용)

- ①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 개최 전면 금지
- 부득이하게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 ② <집합금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시설 등 집합금지

대상 시설

- ▶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활동
- ▶ 어린이집<운영중단(휴원)>
- ▶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운영중단>
- ▶ *긴급보육 유지
- ▶ 스포츠경기<무관중 경기>

- ③ <집합제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포함하여 집합제한(일부시설 추가 핵심방역수칙 부여)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9.21.안제)
- ▶ 실내 스탠딩 공연장^(9.21.안제)
- ▶ 콜라텍^(9.21.안제)
-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9.21.안제)
- ▶ 단란주점^(9.21.안제)
- ▶ 뷔페^(9.21.안제)
- ▶ 감성주점^(9.21.안제)
-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9.21.안제)
- ▶ 헌팅포차^(9.21.안제)
- ▶ 종교시설^(9.21.안제)
- ▶ 노래연습장^(9.21.안제)
- ▶ 목욕탕·사우나^(9.21.안제)
- ▶ 기원^(9.21.안제)

<다중이용시설>

- ▶ 학원^(9.21.안제)
- ▶ PC방^(9.21.안제)
- ▶ 건본주점^(9.21.안제)
- ▶ 계입장·오락실^(9.21.안제)
- ▶ 키즈카페(일반·기타유원시설업)^(9.21.안제)
- ▶ 직업훈련기관^(9.21.안제)
- ▶ 실내 결혼식장
- ▶ 카페(휴게음식점 확대)
- ▶ 영화관
- ▶ *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프랜차이즈형 포함),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 포함
- ▶ 장례식장
- ▶ * 계좌점(프랜차이즈형 포함)
- ▶ 콜센터
- ▶ * 실외 골프연습장
- ▶ 공판장·위판장
- ▶ * 놀이공원(종합유원시설업)
- ▶ 건설현장 구내식당(일반음식점)
- ▶ * 공연장(뮤지컬, 연극 등)
- ▶ 기업 내 구내식당
- ▶ * 실내체육시설(대학운영 및 민간운영)^(9.21.안제)
- ▶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
- ▶ * 야구장, 축구장
- ▶ * 물류창고
- ▶ * 청소년 수련시설
- ▶ * 일반음식점(일반주점 포함)
- ▶ * 멀티방·DVD방^(9.21.안제)
- ▶ * 스타디오편, 독서실
- ▶ * 긴급돌봄, 방과후 학교

- 단, 방역수칙 위반이나 확진자 발생 시에는 즉시 해당 업체 및 관련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④ <공공시설>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시설 특성에 맞는 추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운영

- ⑤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면회를 전면 금지하고 종사자들은 시설 출퇴근 외 타시설 방문 금지

3. (기 간) 2020. 9. 21.(월) 00:00 ~ 2020. 9. 27.(일) 24:00

4. (위반시 조치사항)

- (대 상) 본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조치내용)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 ※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민법상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불이익 처분 권리구제 절차 안내(동시제기 가능)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붙임

집합제한시설 핵심방역 수칙(의무사항)

□ 중점관리시설

구분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1일 2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시설 운영 전·후 및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 1m) 거리 유지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 01시~05시 영업금지	
헌팅포차	▶ 노래 시설을 갖춘 경우 퇴실 시 방, 마이크 소독(마이크 커버 교체)	
노래연습장	▶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10인 이상 집합금지 ▶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뷔페	▶ 테이블 간 간격유지(최소 1m) ▶ 공용접기 등 사용 시 비닐장갑 사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4㎡당 1인 및 50인 이상 집합금지 ▶ 불법(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 집합행위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종교시설	▶ 4㎡당 1인 및 50인 이상 집합금지 ▶ 소모임 금지 ▶ 음식제공 및 섭취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목욕탕·사우나	▶ 01시~05시 영업금지	

구분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기원	▶4㎡당 1인 및 50인 이상 집합금지 ▶실내흡연시설 운영 금지	▶공용물품(바닥판 등) 주기적 소독

□ 다중이용시설

구분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공통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시설 운영 전·후 및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학원	▶50인 이상 집합금지 ▶시설 소독 및 수업 전후 환기 실시 등(1일 2회 이상)	
전원주택	▶50인 이상 집합금지	
키즈카페	▶4㎡당 1인 및 50인 이상 집합금지 ▶놀이기구 등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및 시설 환기실시	
실내 결혼식장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PC방	▶만18세 미만 출입금지 ▶집단(2인 이상) 취식 금지 ▶키보드·마우스 등 정기 소독(대장작성)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계입장·오락실	▶만18세 미만 출입금지 ▶집단(2인 이상) 취식 금지 ▶게임기 정기소독(대장작성) ▶무인운영 금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직업 훈련기관	▶50인 이상 집합금지	
실외 골프연습장	▶타석 띄우기 ▶라커룸 및 샤워시설 사용금지	
놀이공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공용물품, 놀이기구 사용 후 소독 및 환기실시	
공연장	▶4㎡당 1인 및 50인 이상 집합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 지그재그 앉기(착석금지 표시)	
실내 체육시설 (대학운영 및 민간운영)	▶50인 이상 집합금지 ▶체육물품 사용 전후 등 주기적 소독 ▶실내체육시설 동호회 활동금지 ▶실내흡연시설 운영 금지	
야구장·축구장	▶공용 샤워시설 사용 금지	
청소년 수련시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멀티방·DVD방	▶실별 3인 이하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실내흡연시설 운영 금지	

□ 공공운영시설

구분	시설책임자	이용자
공통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시설책임자·운영직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1일 1회 이상 운영직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 작성) ▶시설 운영 전·후 및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구분	시설책임자	이용자
	치 ▶방역관리자 지정	
KDJ센터	▶컨벤션센터 내 시설 운영(대관) 50인 미만	
ACC, 전일빌딩 245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 지그재그 앉기(착석금지 표시)	
공연장·영화관 (국·공립)	▶4㎡당 1인 및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 지그재그 앉기(착석금지 표시)	
도서관 (국·공립)	▶자료실 부분개방(대출, 반납만 허용하며 좌석이용 불가) ※ 작은도서관 포함	
박물관 (국·공립)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단체입장 금지 ▶전시해설 금지 ▶다른 관객과 2미터 유지	
미술관 (국·공립)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단체입장 금지 ▶전시해설 금지 ▶다른 관객과 2미터 유지 ▶시립미술관 내 체육시설(게이트볼, 테니스장) 생활체육동호회 활동금지	
공공기관 부속시설 (교육장 등)	▶4㎡당 1인 및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좌석 한칸 띄우기, 지그재그 앉기(착석금지 표시)	
공공체육 시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생활체육동호회 활동금지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403호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방역관리 강화 -

콜센터 집합제한 행정조치(기간연장) 고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콜센터 집합제한 행정조치(기간연장)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9. 21.

광 주 광 역 시 장

1. 기 간 : 2020. 9. 21.(월) 00시 ~ 9. 27.(일) 24시
2. 대 상 : 콜센터 68개소

계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비고
68	14	32	13	9	

3.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4. 조치내용 : 아래 방역수칙 준수의무 부과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영업 전/후 시설 및 장비 소독(대장작성) ■ 사업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 사업장 내 종사자 간 최소 1m 간격 유지 	<p>출입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

5. 위반 시 조치사항

- (대 상) 본 행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 (조치내용)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 ※ 행정조치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민법상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불이의 처분 권리구제 절차 안내(동시제기 가능)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처

○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관 여성일자리팀 정용복 주무관 ☎ 062-613-3592. 끝

※ 집합 :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등 명칭을 불문하고, 홍보 및 판매를 목적으로 모이거나 모이게 하는 행위

2.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3. 처분사유 : 시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개최결과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 방역수칙 의무화를 포함하여 집합제한으로 조정하고,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과 관련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역사회로의 확산 위험성이 있어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불법(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 등 업체의 집합행위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있음.

4. 처분기간 : 2020. 9. 21.(월) ~ 별도 해제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제 2020-402호)

5.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0. 9. 21. 부터

6.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고, 불법(미등록·미신고) 업체의 집합행위에 대한 장소를 대관하는 자의 경우 방조행위로 처벌 될 수 있음.

9. 문의처 : 일자리경제실 민생경제과 소비자보호팀 062-613-3743. 끝.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 - 404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제한 및 불법(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광주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방문판매업 등에 대하여 집합제한 명령 발령하고, 불법(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업 등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년 9월 21일

광주광역시장

1. 처분 대상 및 내용

-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고한 다단계판매업체·후원방문판매업체·방문판매업체(타 시도 등록·신고 포함) : 집합제한
 - 4㎡당 1명 인원 제한 및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허용
 - * 방역수칙 : 전자출입명부 설치, 마스크 착용, 출입자 증상 확인, 시설 소독 및 환기 등
-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광주광역시 내에서 영업하는 불법(미등록·미신고) 업체 : 집합금지
 - 해당 업체의 집합행위에 대한 장소 제공도 금지
- ③ 위와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즉시 집합금지 및 필요시 시설폐쇄 조치